



NO.2017-IMO-07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30

Fax :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13 March 2017

Person in charge : Kim Hoi-Jun

Subject : BWM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IOPP 정기검사 조기시행_Rev.1

지난 기술정보(2016-IMO-02)에 언급한 바와 같이,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은 2017년 9월 8일 이후로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한, 총회 결의서 Res.A.1088(28)에 따라 현존 선박으로 분류가 되는 2017년 9월 8일전에 건조된 모든 선박들은 협약의 발효일자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IOPP 정기검사 시까지 BWM 협약의 D-2 규칙에 언급한 성능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평형수 처리장치를 선박에 탑재하여야 합니다.

2017년 9월 8일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IOPP 정기검사 시에 모든 현존선박들은 BWMS를 소급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G8 지침서에 따라 승인받은 장비가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고 USCG 형식승인을 득한 장비 또한 충분한 이용가능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부 기국들은 협약의 발효일자 전에 건조된 현존선박들을 대상으로 협약의 발효일자 전에 IOPP 정기검사만 타 협약에서 요구하는 협약증서와 별개로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음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기국지침들에 대한 요약사항을 하기와 같이 제공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1. 각 기국지침의 요약

기국	문서 번호	개 요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해사산업기술과-34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기간의 새로운 IOPP 증서 교부. 단, 차기 정기검사에서 협약증서들의 검사 주기를 일치시킬 것
파나마 (Panama)	MMC-342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선주는 건별로 파나마 정부에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함: 1. 선급 보고서 사본 (Class Status Report Copy) 2. IOPP 정기검사가 조기수검 될 장소 및 시간이 언급된 선급의 확인서

마셜아일랜드 (Marshall Islands)	Technical Circular No.25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기간의 새로운 IOPP 증서 교부. 기국 정부로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위한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아니함. 또한, 차기 정기검사에서 협약증서들의 검사주기를 일치시킬 것
라이베리아 (Liberia)	Marine Advisory 14/2016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기간의 새로운 IOPP 증서 교부. 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협약증서들의 검사주기를 일치시킬 것
바하마 (Bahamas)	Technical Alert No.16-05 Rev.3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기간의 새로운 IOPP 증서 교부. 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협약증서들의 검사주기를 일치시킬 것
독일 (Germany)	Circular 03/2016(ISM)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기간의 새로운 IOPP 증서 교부. 선주는 독일정부 및 선급에게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함
인도 (India)	Engineering Circular No.2 of 2016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함. 선주는 선급에게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함
안티구아 바부다 (Antigua & Barbuda)	Information Notice 2016-003 (Rev.2)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함. 선주는 선급에게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함. 단, 해당선박의 평형수 용량 합계가 10,000톤을 초과하는지 유무에 따라 보고요건이 상이함
바베이도스 (Barbados)	Information Bulletin No.264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함. 선주는 정부에게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차기 정기검사에서 협약증서들의 검사주기를 일치시킬 것
룩셈부르크 (Luxembourg)	Circular CAM 10/2016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함. 선주는 문서화되고 근거가 충분한 사유와 함께 건별로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선급에게 신청해야 하며, 차기 정기검사에서 협약증서들의 검사주기를 일치시킬 것
세인트 빈센트 (St. Vincent & the Grenadines)	Circular No. BWM 004 - Rev.2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함. 선주는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건별로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선급에게 신청해야 함
호주 (Australia)	-	호주정부는 원칙상 타 협약증서의 정기검사와 별개로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허용하지 않으며, BWM 협약의 이행절차를 곧 완료할 예정임

사이프러스 (Cyprus)	Circular No. 1/2017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함. 선주는 정부에게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차기 정기검사에서 협약증서들의 검사주기를 일치시킬 것
싱가폴 (Singapore)	Survey Circular No. 02/2017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기국 정부로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위한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아니함
벨리제 (Belize)	MMN-17-001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기간의 새로운 IOPP 증서 교부. 선주는 선급에게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차기 정기검사에서 협약증서들의 검사주기를 일치시킬 것

2.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 관련 검사신청

.1 IOPP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급적용요건들이 추가로 만족되어야 합니다:

- IOPP Form B를 소지하고 있는 유탱커선이 2016년 이후로 정기검사를 조기수행할 경우, 복원성 적하지침 기기(Stability Instrument)의 설치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과거의 기술정보(2015-IMO-05)를 참조바랍니다.
 - IOPP Form A 또는 B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선박이 2017년 이후로 정기검사를 조기수행할 경우, 기관구역의 유성잔류물 및 빌지시스템의 배관분리 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과거의 기술정보(2016-IMO-06)를 참조바랍니다.
- .2 타 협약증서에 관련된 정기검사와 별개로 상기 기국지침들에 의거하여 IOPP 정기검사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는 반드시 협약의 발효일자(2017년 9월 8일) 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3 첨부의 기국지침을 고려하여,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위한 각 정부 또는 선급으로의 신청에 관련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4 특히, 파나마 국적선이 협약의 발효일자 전에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신청할 경우, 선주는 선급(IOPP 정기검사가 수행될 지역의 관할 지부)으로 IOPP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고, 해당지부에서 발행하는 Confirmation(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담당검사원의 E-mail)을 함께 첨부하여 하기의 파나마 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egumar 부산사무소장 김충희 (Choonghee KIM)
Senior Technical Officer of SEGUMAR-KOREA / BUSAN OFFICE
General Directorate of Merchant Marine
Panama Maritime Authority
Phone : +82(70)-8799-8290
E-mail : segumarbusan@gmail.com / segumarbusan@segumar.com

.5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에 따라 타 협약증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만료일을 지닌 IOPP 증서는 차기 IOPP 정기검사 시에 증서조화제도(HSSC)에 따라 타 협약증서의 만료날짜와 일치시켜 발행할 예정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 : 1. Flag instructions on de-coupling IOPP renewal Survey - 1부

정 부 대 행 검 사 본 부 장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조선소, 관련 업체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